H - 103 - 2012

냉동설비 보유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지침

2012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H - 103 - 2012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유장진
- 제·개정 경과
- 2012년 10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H-80-2012,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
- 냉동설비 등 유해가스 취급설비가 있는 기계실 작업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2012
- Suggested Guidelines For Entry Into Mechanical Rooms: Recreation Facilities, Ontario Recreation Facilities Association INC., 2002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278조(개조, 수리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(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H - 103 - 2012

냉동설비 보유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안전기준 제278조(개조, 수리 등) 및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(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에 의거 냉동설비가 있는 기계실 내부에서 냉매용 프레온 등을 취급하거나 들어 있는 배관 등의 설비를 보수, 점검 등을 하는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프레온, 암모니아 등 불활성기체를 냉매로 사용하는 설비가 있는 지하장소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기계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하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기계실"이라 함은 사업장 또는 건물의 냉난방 설비 등을 가동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지하장소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한다.
- (나) "유해가스"라 함은 냉매, 소화제 등 기계실 내부의 설비 또는 배관에 들어 있거나 주입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물질을 말한다.
- (다) "밀폐공간"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산소결핍,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를 말한다.
- (라) "감시인"이라 함은 작업진행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 요청,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- (마) "환기장치"라 함은 기계실 내부의 공기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작업장 내부로 불어넣어 주는 급기설비와 내부의

H - 103 - 2012

오염된 공기를 작업장 외부로 내보내는 배기설비를 포함하는 전체환기 장치를 말한다.

- (바) "이동식 환기팬"이라 함은 작업지점을 국소적으로 환기하기 위한 포터블팬 (Portable Fan)으로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급기 또는 배기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기계실 작업의 특성 및 위험작업

4.1 기계실 작업의 특성

- (1) 기계실은 구조 및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 할 때,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의 정의에 따른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, 작업의 조건이나 기계적 결함 또는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밀폐공간과 유사한 유해·위험성이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.
- (2) 개구부(출입문, 창문, 환기구 등)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누출된 물질의 물리·화학적 특성, 기계설비의 가동, 환기장치 등의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따라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, 질식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
- (3) 기계실의 위치는 대부분 다른 장소와 격리되어 있어, 사고 발생 시 재해자의 구조작업 또는 긴급 조치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.

4.2 기계실 재해발생 위험작업 특성

- (1) 정기적인 작업보다는 냉동설비(냉동기) 등의 기계설비 보수작업과 같은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에서 주로 재해가 발생한다.
- (2) 설비노후 또는 결함에 의한 배관파열, 접속부의 헐거워진 설비나 기계 부위 등에서 누출된 유해가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다.

H - 103 - 2012

- (3) 기계실 내부에서 환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더라도 프레온 냉매가스 또는 이산화 탄소 냉매제가 다량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환기장치의 정상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.
- (4) 기계실에서 질식되어 의식이 없는 재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

5. 기계실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

5.1 기술적 조치사항

- (1) 환기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계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유해가스 (프레온, 암모니아, 이산화탄소 등) 또는 산소 등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및 경고(alarm)시스템을 설치한다.
- (2) 내부의 상태를 기계실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유해가스 또는 산소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.
- (3) 환기장치는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하고, 수동 작동스위치는 반드시 기계실 출입구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냉동기 보수 등 냉매가스 누출 우려 시 별도의 이동식 환기팬을 설치하여 작업지점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류를 확산시킨 상태로 작업을 수행한다.

5.2 관리적 조치사항

5.2.1 작업장 관리

- (1) 작업에 적합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.
- (2) 일상적 점검, 설비 운전·유지·보수작업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작업자가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한다.

H - 103 - 2012

- (3) 소화기를 설치한다(건식 소화기 설치를 권장).
- (4) 기계실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, 장해물을 제거한다.
- (5) 각종 화학물질은 배수시설이 설치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.
- (6) 기계실을 각종 장비 및 자재를 보관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5.2.2 교육 실시

- (1) 기계실내에 출입하는 관리감독자, 감시인, 근로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가) 유해가스의 종류, 유해·위험성
- (나)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방법
- (다) 개인보호장구 및 안전장비의 사용방법
- (라) 기계실 작업 단계별 안전작업 절차
- (마)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
- (바) 응급처치 요령
- (사) 그 밖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
- (2)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.

5.2.3 작업관리

- (1) 모든 작업상태, 작업절차, 잠금조치, 내부공기의 상태, 보수작업 내역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.
- (2) 기계실 작업단계별 안전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완한다.
- (3) 공기호흡기, 방진·방독마스크, 보안경, 보호장갑 및 보호의 등의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준비한다. 환기가 불충분하여 프레온 가스 등의 휘발성이 강한 가스의 누출로 질식위험이 우려되는 곳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

H - 103 - 2012

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
- (4)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제정하여 시행한다. 이 경우 각종 시설관련 관리자, 책임자, 기타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 하며, 특히 작업 시 설비 내부 등으로 부터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질식 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계실의 작업은 사전에 관계자의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하여 작업을 수행한다.
 - 예) 작업자 \to 시설관리자 \to 관리책임자 \to 병원, 소방서, 경찰서 등 방재관련 기관
- (5) 적절히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계실을 출입하도록 한다.
- (6) 유해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작업을 금지한다.
- (7) 작업 승인절차 준수 및 기계설비에 대한 잠금조치(lockout) 등 적절한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을 금지한다.
- (8) 기계실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 등 공기상태를 점검하기 전에는 기계실 내부 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.

6. 기계실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수칙

6.1 일상적 점검을 위한 출입 시

기계실 관계자 또는 출입이 허가된 근로자가 점검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로서 공기 중에 유해가스 누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작업과정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1) 기계실 내부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확인한다. 다만, 이 과정은 반드시 출입 전 기계실 외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
- (2) 모든 출입자는 내부 공기 상태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기계실에 출입한다.

H - 103 - 2012

- (3) 기계실 내부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.
- (4) 환기장치는 기계실 내부에 관계자가 있는 경우 항시 가동하며,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(5) 근로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기계실 내부로 진입하여 기계실 장비의 점검과 측정 업무를 수행한다.
- (6) 출입하는 근로자는 <부록>의 「냉동설비 보유 기계실 안전보건 점검표」를 활용하여 작업전 안전보건 사항을 점검한다.
- (7) 설비 작동과 관련하여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.
- (8) 유해가스 누출 시 환기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,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.
- 6.2 설비 운전 및 유지·보수작업을 위한 출입 시

근로자가 정상적인 설비가동 업무를 수행하거나 설비의 유지·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1) 전 항의 일상적 점검을 위한 출입 시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한다.
- (2) 보호안경, 보호장갑, 보호의, 호흡용보호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. 냉매제 등 누출시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기계장치에 대한 작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예기치 않은 유해가스 (각종 형태의 에너지 포함)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잠금 조치절차에 따라 잠금 조치(lockout)를 한다.
- (4) 작업 시 유해가스의 갑작스런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이동식 환기팬을 설치하고 해당 작업지점에 공기를 불어넣는(급기) 방법으로 작업 중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이동식환기팬은 기계실에 급배기설비가 설치되어

H - 103 - 2012

있더라도 추가로 설치하며, 작업 상황에 따라 분당 $30 \sim 50 \text{ m}^3$ 의 송풍량을 가진 환기팬을 1대 이상 설치한다.

- (5) 호흡용보호구, 보호의, 구조용 로프 및 장비, 해당 유해가스 감지장치 및 응급조치 키트(Kit) 등 비상상황 시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한다.
- (6) 밀폐공간 구조과정,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감시인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작업을 감독하도록 한다.
- (7) 기계·설비 작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·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계실내 공기상태를 측정한다.

6.3 긴급상황 발생 시

인명구조 시 또는 유해가스의 위험한 농도 상태를 포함한 긴급상황 발생 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1) 긴급상황 대책을 가동한다. 긴급상황 대책은 평상시 모의훈련을 통해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거 실시한다.
- (2) 해당 구역에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킨다.
- (3)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조를 위한 출입 허가를 하여야 한다.
- (4) 공기호흡기 및 구조장비를 갖추고 전신보호의를 착용한다.
- (5) 응급조치, 심폐소생술 및 구조절차에 대해 훈련받은 감시인을 현장에 배치한다.
- (6) 구조팀 이외의 자가 기계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. 단, 응급 구조훈련을 받은 작업자가 구조를 위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출입할 수 있다.
- (7) 기계실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 등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될 때까지 환기를 시키고, 모든 출입구를 차단한다.

H - 103 - 2012

- (8) 사고를 유발한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쇄(shutdown)하여야 한다.
- (9) 적합한 훈련을 받은 자가 해당 절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 장비를 사용하여 설비를 보수한다.
- (10)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는 "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H-80-2012)"에 따라 실시한다.

KOSHA GUIDE H - 103 - 2012

<부록>

냉동설비 보유 기계실 안전보건 점검표

점검 항목	확인		
	예	아니오	해당 없음
1. 절차의 제공, 검토 및 시행			
① 모든 작업 절차를 검토 및 이해하고 교육훈련을 완료했는가?			
② 작업자는 항상 현장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가?			
③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검토했는가?			
2. 화재 폭발 및 피해 확산 예방 조치			
① 용접, 절단, 화염사용 작업이 있는가?			
② 용접작업 등 화기 사용작업에 대한 허가와 게시를 하였는가?			
③ 소방 도어, 방폭 도어, 차단 도어는 정상 작동하는가?			
3. 기계실 작업시 안전조치			
① 잠금 및 안내표지 설치 절차는 수립되었는가?			
② 동력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가?			
③ 전기적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였는가?			
④ 회전 장치에 장금장치설치하거나 제거 또는 동력을 차단하였는가?			
⑤ 비상용 조명은 사용가능한가?			
4. 적정한 공기상태의 유지 및 모니터링			
① 내부는 지속적으로 환기가 실시되고 있는가?			
② 유해가스의 갑작스런 누출시 환기를 위한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?			
③ 산소농도 18%이상~23.5%미만 유지하는가?			
④ 내부 공기상태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고 작동하고 있는가?			
5. 안전보건 시설 및 보호구			
① 개인 보호 장비와 사용지침이 제공되었는가?			
② 공기 공급기, 검정받은 호흡용 보호구가 제공되었는가?			
③ 안전보건 장비와 구명로프가 제공되었는가?			
④ 머리, 눈, 청각, 손, 발 및 신체 보호 장비를 제공되었는가?			
⑤ 적절한 조명장치가 준비되고 접지되었는가?			
⑥ 소화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?			
⑦ 통행로 또는 작업장 바닥의 미끄러짐 예방조치가 실시되었는가?			
⑧ 사워시설과 세안기는 사용가능한가?			
6. 비상시 대책 및 구조			
①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훈련된 수행자가 작업장밖에 대기하고 있는가?			
② 비상시 사용할 구조용 장비가 준비되었는가?		1	
③ 긴급 대응 팀이 사용할 수 긴급 경보 및 통신방법은 있는가?		1	
④ 긴급연락처와 위험시설물의 위치를 게시하였는가?			

※ 이 점검표는 기계실내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,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.